

부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8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4년 9월 7일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주차사업단장 김철원)

□ 제안이유

-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차장법('03. 12. 31, 법률 제7055호)· 동법시행령('04. 2. 9, 대통령령 제18281호) 및 동법시행규칙('04. 2. 7, 건설교통부령 제390호)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,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지금까지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에 포함하여 시설면적 100㎡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, 공동주택·다가구주택과 같이 전용면적 85㎡이하의 합계기준 70㎡당 1대, 85㎡초과는 합계기준 65㎡당 1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함.(안 별표 2 제2호 및 제5호)

- 종전에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면적 87㎡초과 시에 1대 였으나 앞으로는, 시설면적 50㎡이상부터 1대씩 설치하도록 변경함.(안 별표 2 제4호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강화되는 조항으로 단독주택 15평에 주차장 1대씩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조례규정의 강화폭이 크다고 보는데 ?	○ 부천시 조례는 주차장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규정을 강화하는 것임.
○ 주차장 조례를 강화하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건축경기의 위축되는 작용이 우려되며, 시민들에게 미치는 효과 분석은 ?	○ 조례를 강화하면 시민생활은 규제 받고 위축되나 우리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여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함.
○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·군과 비교는 하였는지 ?	○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바 있음.
○ 부설주차장은 시간이 지나면 창고 용도나, 물건을 적치하여 사실상 폐지되는 주차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 조례 제정과 더불어 사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?	○ 건축과의 단속과 병행하여 이용도 활성화 측면을 제고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겠음.
○ 건축물 부설주차장에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차장으로써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?	○ 제작, 설치가 되도록 하겠음.
○ 주차장 확보의 문제는 오피스텔 같이 대규모 주차 수요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라고 보는데 ?	○ 금번 조례에는 오피스텔과 같이 주차 수요가 크게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조례 규정을 강화하는 것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 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6호
의결 년월일	2004. 9. 9 (제114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8. 25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차장법('03. 12. 31, 법률 제7055호)· 동법시행령('04. 2. 9, 대통령령 제18281호) 및 동법시행규칙('04. 2. 7, 건설교통부령 제390호)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,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지금까지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에 포함하여 시설면적 100㎡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, 공동주택·다가구주택과 같이 전용면적 85㎡이하는 합계기준 70㎡당 1대, 85㎡초과는 합계기준 65㎡당 1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함.(안 별표 2 제2호 및 제5호)
- 나. 종전에 단독주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면적 87㎡초과시에 1대 였으나 앞으로는, 시설면적 50㎡이상부터 1대 씩 설치하도록 변경함.(안 별표 2 제4호)

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중 “전용주차장”을 각각 “전용주차구획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 시설물란중 “업무시설”을 “업무시설(오피스텔을 제외한다)”로 하고, 동표 제4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단독주택(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)	시설면적 50㎡이상 134㎡이하의 경우에는 1대, 시설면적 134㎡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㎡를 초과하는 87㎡당 1대를 더한 대수
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업무시설중 오피스텔	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㎡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㎡당1대, 전용면적이 85㎡를 초과 하는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㎡당 1대로 한다. 다만,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

별표 2의 제7호 시설물란중 “기타”를 “그밖의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·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20조(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등)</p> <p>①장애인· 노인·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<u>전용주차장</u>으로 구분 · 설치하여야 한다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<u>전용주차장</u>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~ 3 (생략)</p> <p>③장애인 <u>전용주차장</u>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④장애인 <u>전용주차장</u>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애인 <u>전용주차장</u>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2.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<u>전용주차장</u>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의(장애인 <u>전용주차구획</u> 설치기준등)</p> <p>①----- ----- ---- <u>전용주차구획</u> ---- ----- -----<u>전용주차구획</u>----- -----</p> <p>②----- --- <u>전용주차구획</u> ----- ----- 1.~3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<u>전용주차구획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④---<u>전용주차구획</u>----- ----- 1.----- ---<u>전용주차구획</u>----- ----- 2.-----<u>전용주차구획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			

현	행	개	정	안
[별표 2]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		[별표 2]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		
시 설 물	설 치 기 준	시 설 물	설 치 기 준	
1. (생 략)	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2.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을 제외한다),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), 운동시설(골프장, 골프 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), 업무시설, 공공용시설중 방송국	(생 략)	2.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 업무시설 (오피스텔을 제외한다), -----	(현행과 같음)	
3. (생 략)	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4.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	시설면적 87㎡초과 134㎡이하는 1대, 시설면적134㎡ 초과인 경우는 1대에 134㎡를 초과하는 87㎡ 당 1대 를 더한 대수 다만, 주차 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	4. 단독주택 (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)	시설면적 50㎡이상134㎡ 이하의 경우에는 1대, 시설면적 134㎡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㎡를 초과하는 87㎡당 1대를 더한 대수	
5. 공동주택 (다세대주택, 기숙사를 제외한다)	시설면적 80㎡당 1대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	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 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업무시설중 오피스텔	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㎡이하인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70㎡당1대, 전용면적이85㎡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65㎡당 1대로 한다. 다만,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 당 1대 이상	
6. (생 략)	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7. 기타 건축물	(생 략)	8. 그밖의 건축물	(현행과 같음)	